

2024. 1. 25.(목) 10:00

제3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3호

2. 발 의 일: 2024년 1월 8일

3. 발 의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23.8.16 일부개정, ' 24.2.17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달성군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복수대표자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후단)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서명요청위임 절차 신설(안 제6조)
- 청구인명부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 신설(안 제7조~제7조의2)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9조의2)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 6.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7. 검토의견

-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21년 10월,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23.8.16. 일부개정, '24.2.17.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참고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상위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 하였으며,
- 주민조례발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해 조례의 주민발안 청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 를 “주민조례청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 ” 를 “달성군수(이하 “군수” ”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를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권자” 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로 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을 “의장” 으로,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구의 취지” 를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의장은 선정 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대표자 전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을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표자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 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 이라 한다) 또는 각 그 사본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청구인명부)” 를 “(청구인명부 작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체류지를 포함한다),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및 군의회 게시판,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이의신청)” 을 “(이의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 정한다” 를 “을 준용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사무”를 “확인사무 등”으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 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라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위 청구조례안 1부 2.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 공동대표자용 서식 1부(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입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직인</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8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span style="font-size: 0.8em;">직인</span> </div>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하고,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입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방법

1. “번호” 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 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 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6. “서명을 요청한 사람” 이 있는 쪽을 1쪽으로 하고, 2쪽부터는 해당란을 삭제하여 작성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선정)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선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선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n<sup>2</su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 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 할 수 있도록 <u>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p>② 대구광역시 <u>달성군수</u>(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u>청구권자 총</u></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 ----- ----- ----- ----- <u>주민</u> <u>조례청구</u>----- ----- -----.</p> <p>② ----- <u>달성군수</u>(이하 “<u>군수</u>” ----- ----- -----.</p> <p>③ <u>의회의 의장</u>(이하 “<u>의장</u>”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법 제5조제2항에 따른</u></p>



<신 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의장은 선정  
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  
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  
로 대표자 전부에 대한 통지를 갈  
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권자에  
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청구권  
자에게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이라 한다) 또는 각  
그 사본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제1항  
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

<신 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 작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체류지를 포함한다),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② (생략)

<신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 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및 군의회 게시판,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제>

제9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신 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

----- 별지 제7호서식-----

② -----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

<신 설>

<신 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협조) -----  
----- 확인사무 등 -----  
----- 경우 -----  
-----  
-----  
-----  
-----.

<삭 제>

<삭 제>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4.2.17.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 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 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

· 면 ·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34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8일

3.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달성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신설(안 제3조)
- 인터넷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시행사업 규정(안 제4조)
- 인터넷 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단 규정(안 제6조)
- 시민홍보단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2항)
- 이벤트 참여자 경품 제공의 근거 마련(안 제9조)

## 6.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 11.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인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한 준용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의 운영에 의정홍보가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제4조(사업 등)에 의정소식 및 홍보사항을 사업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홍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세지, 축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사업 내용에 게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한 내용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또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준용하여야 할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 등

을 명시한 점, 기존 블로그에 국한되어 있던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  
화를 위한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SNS까지 확대하여 시민홍보단으로  
운영하는 점,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원고료, 경품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미루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5조로 하고 제4조(중전의 제3조) 및 제5조(중전의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SNS 개설 및 운영
5.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국·시·군·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군·의정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군민참여 등)”을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인터넷 홍보”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블로그기자 등)”을 “(시민홍보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블로그기자 등”을 “블로그기자, SNS 서포터즈 등(이하 “시민홍보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기자 등”을 “시민홍보단 중 블로그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시민홍보단은 인터넷 홍보 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 등의”를 “시민홍보단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자”를 “홍보”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민홍보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에의 군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를 “시민홍보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원고료·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보상)” 을 “(표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블로그기자과 인터넷” 을 “인터넷” 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를 “콘텐츠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에게” 로, “보상 및 표창” 을 “표창” 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품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
2.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3.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제공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 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li> <li>2.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li> <li>3. “인터넷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의 매체를 말한다.</li> <li>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li> </ol>
<p><u>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u></p>	<p><u>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u></p>

업을 시행한다.

1. 국·시·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운영)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SNS 개설 및 운영
5.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 이어야 한다.

1. 국·시·군·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군·의정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신 설>

제5조(군민참여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블로그기자 등)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

② 인터넷 홍보 -----  
-----  
----- 없으면 -----  
-----.

제6조(시민홍보단 운영) ① -----  
----- 블로그기자, SNS 서포터즈 등(이하 “시민홍보단”이라 한다)---.

② 시민홍보단 중 블로그기자----  
-----.

③ 시민홍보단은 인터넷 홍보 매체 -----

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보상) 군수는 블로그기자와 인터넷 홍보 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  
-----.

④ ----- 시민홍보단원에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홍보 -----  
-----

⑤ 시민홍보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에의 군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① -- 시민홍보단 -  
-----  
-----.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원고료·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인터넷 -----  
----- 콘텐츠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에게 -----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 (생 략)

----- 표창-----  
---

제9조(경품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이벤트

2.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  
벤트

3.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  
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제공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  
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  
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 「공직선거법」(2023.12.28. 일부개정·시행)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

物·錄音物·錄畫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1. 7. 28.][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8. 5. 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舉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첨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 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7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8일

3.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동물보호에 관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6.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법률)」이 2024. 1. 2.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성군민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군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 상위법에 신설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명칭 및 조문 변경,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를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 행위”를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 행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군수의 책무)”를 “(군수 및 군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함에 있어”를 “수립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4항” 을 “법 제15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 라 한다) 또는 인식표” 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로, “영 제7조제1항” 을 “영 제10조제3항” 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 을 “법 제35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 을 “법 제3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5조제1항” 을 “규칙 제1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5조” 를 “영 제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 을 “때는” 으로, “신청을 접수할” 을 “신청받을”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발생두수” 를 “발생마릿수”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1항” 을 “규칙 제16조” 로, “규칙 제19조” 를 “규칙 제20조” 로, “규칙 제15조제4항” 을 “규칙 제21조제3항”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 을 “법 제36조제4항”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에는” 을 “때는” 으로, “조치를 하여야” 를 “조치하여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 을 “영 제16조” 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6호” 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2호”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 를 “법 제3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상당한” 을 “다친” 으로, “공수의로 하

여금”을 “공수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및 제46조”로, “분양을 하는”을 “분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이 되어”를 “등록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43조”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분양을 하는”을 “분양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요된”을 “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된 경비”를 “드 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드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41조” 를 “법 제90조” 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영 제5조” 를 “영 제6조” 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 ----- ----- ----- -----.</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유실·유기동물” (이하 “유기등 동물” 이라 한다) 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4. “등록대상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p>	<p><b>제2조(정의)</b>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법 제2조 제1호----- ----- ----- -----.</p> <p>4. ----- ----- - 제4조----- ----- ----- -----.</p>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생략)

6.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유기등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 9. (생략)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행위를 당한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5. (현행과 같음)

6. -----  
----- 법 제35조 및 제36조-----  
-----  
-----  
-----.

7. ~ 9. (현행과 같음)

10. -----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 행위-----  
-----.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립하는 데 -----  
-----.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  
-----  
-----  
----- 법 제15조제4항-----  
-----  
-----  
-----  
-----  
-----  
-----.

② -----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  
----- 영 제10조제3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대해서는-----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 3. (생략)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등 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법 제35조제1항-----

② ----- 법 제36조-----

③ ----- 규칙 제16조-----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6조-----

④ ----- 때는 ----- 신청 받을 -----

⑤ ----- 발 생 마 릿 수-----

⑥ (현행과 같음)



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등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등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료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  
----- 법 제34조-----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다친 -----  
-----  
-----  
--- 공수의료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하여도 유기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증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증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인 유기등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에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생략)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  
-- 법 제45조 및 제46조-----  
-----  
----- 분양하는  
-----  
-----  
-----.

④ -----  
-----  
-----  
----- 등록되어 -----  
-----  
-----.

⑤ 법 제45조-----  
-----  
-----.

1. 영 제6조-----  
-----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현행과 같음)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가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유기동물, 유기동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② -----  
-----  
---- 영 제6조-----  
-----  
-----  
-----  
- 법 제45조-----  
-----  
- 먼저 -----.

③ 법 제43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분  
양하는 -----  
-----.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  
-----  
-----  
-----  
-----  
-----  
--- 든 -----  
-----.

② -----  
-----  
-----  
-----  
----- 든 경비-----  
----- 든 비용-----  
-----.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출입·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

② -----  
-----  
-----  
-----.  
-----  
-----  
-----  
-----.

③ -----  
-----  
----- 드  
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입·검사 등) ①

----- 법 제86조-----  
-----  
-----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 -----  
-----  
-----  
-----  
-----.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명

② -----  
-----  
-----  
--- 때는 -----  
-----  
-----  
-----  
-----.

제15조(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 법 제90조-----  
-----  
----- 명예 동물보호관-----  
-----.

② ----- 명예동물보호관-----  
-----  
-----.

③ ----- 명예동물보호관에게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동물보호법(법률)」(2024. 1. 2. 일부개정, 2025. 1. 3. 시행)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임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

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8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10일

3.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중장년 문화 여가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달성군립합창단 합창단원의 모집 및 정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합창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변경(안 제2조)
- 합창단원의 정년 기준 완화(안 제6조)

##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과 더불어 합창단원의 선발 자격과 정년 기준을 완화하여
- 더 많은 군민에게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55세 이하의” 를 “60세 미만의” 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58세” 를 “60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u>55세</u>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p>	<p>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 ----- ----- <u>60세</u> 미만의 ----- ----- ----- ----- -----.</p>
<p>제6조(단원의 위·해축)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u>58세</u>가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p>제6조(단원의 위·해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60세</u>----- -----.</p>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5호

2. 발 의 일: 2024년 1월 8일

3.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를 정의하여 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임용권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피해 신고 절차·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보호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6조)

## 6.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 20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 2019.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2019. 7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1. 10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규정 추가  
(사용자 등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와 객관적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과태료 규정을 추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등을 말한다.

가. 군(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한다)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임용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그 지위·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질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과 근거없는 소문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4.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을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다른 공무원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그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7.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신고자등”이란 피해자 또는 신고자와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자의 책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예방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관별로 적합한 예방교육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5. 신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

가.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다. 그 밖에 신고자등에 대한 법적 지원

6. 신고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기관, 그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임용권자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행위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의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행위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지변경·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질 피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따른다.

⑤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접수의 처리)**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실시)** 임용권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등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등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임용권자는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

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무원등의 신고자등의 보호)** ①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자등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 감사부서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

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등의 보호 위반 시 조치)** 임용권자는 신고자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허위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상담자문위원 구성 등)**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의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자체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공무원법(법률)」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법 제6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직위
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속 기관(시·도와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8조(회피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고충심사절차)**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5조(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직위
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75조의2(성폭력범죄·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5.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근로기준법(법률)」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22.6.2. 일부개정 · 시행)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6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8일

3.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대학생을 추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액 지급 규정, 장학생의 선발 기준 명확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제명 등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반영하여 개정사항 정비
- 장학생 지급대상 확대 및 선발 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7조)
- 장학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8조)
- 장학기금 특별회계 규정 삭제(안 제9조)

## 6.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7. 검토의견

- 전국 기초 지자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또한,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선발을 둘러싼 청탁이나 자의적 선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사상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액 지급 규정, 장학생의 선발 기준 명

확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군수에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 “년간”을 “연간”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를 “퍼센트”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 “(지급의 정지)” 를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②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u> 장학생은 <u>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u>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또는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과반수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p> <p><u>3.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리장의 자녀</u></p> <p><u>&lt;신 설&gt;</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u> ① ----- <u>1년 이상 근속한 이장</u>-----</p> <p>-----.</p> <p><u>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u></p> <p><u>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u></p> <p><u>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u></p> <p><u>4. ----- 사람</u></p> <p><u>5. ----- 이장</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u></p>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공납금 수납완료일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 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리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추천) -----  
----- 사람으로서 -----  
----- 사람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학생의 정원) ----- 연간  
-- 이장 ----- 퍼센트 --  
----- 범위에서 -----  
--.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공납금 수납완료일전 1월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 5. (생략)

<신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 「초·중등교육법(법률)」(2023.9.27. 일부개정·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법률)」(2023.6.9. 타법개정, 2023.7.10.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2023.6.30. 제정·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나. 특수학교(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다.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39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1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개정(안 제42조)

6.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중 “높이제한”을 “높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9미터이하”를 “10미터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략)>

.

.

#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40호

2. 제 출 일: 2024년 1월 1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한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3조(책임)에 따라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 후 영어학습 관련 사업을 전담 위탁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 재위탁 대상사무 개요

가. 사업대상 :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한 175개소 어린이집

나. 사업기간 : 2024. 3. 18. ~ 2024. 12. 20. / 40주간 실시

다. 참여인원 : 4,290명(만2세 이상 영유아 대상)

라. 사 업 비 : 1,450백만 원(전액 군비)

마. 위탁사무 : 주2회 ~ 3회 영어 선생님의 어린이집 방문수업 일체

바. 시행방법 : 달성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영어전문기관 위탁

사.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구분	1 권역	2 권역	3 권역	합계
해당 읍·면	화원, 옥포, 가창	다사, 하빈	논공, 유가, 현풍, 구지	
어린이집 개소	40개소	68개소	67개소	175개소
수업 아동수	982명	1,494명	1,814명	4,290명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3년도 기존 사업체가 그대로 재선정 / 사업권역도 동일

- 최고 고점 사업체 : 에듀플러스(2권역 우선 희망)
- 차순위 고점 사업체 : 응진에듀(3권역 우선 희망)
- 3순위 고점 사업체 : 대구동심(최고 고점 사업체인 에듀플러스와 희망권역이 동일함에 따라 2순위 희망 권역인 1권역으로 배정)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가. 모집공고 : 2023. 11. 29. ~ 12. 14.
- 나. 신청접수 : 2023. 12. 13. ~ 12. 14.
-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2. 18.
-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회 동의 : 2024. 1.
- 마.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2.
- 바. 사업진행 : 2024. 3. 18. ~

○ 사업비 산출근거

- 가. 1주간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수업 방문수업 횟수 : 818회
- 나. 사업 기간 : 40주

- 다. 1회 수업료(직접 강의료 및 교재교구비 포함) : 44,315원
- 라. 산출기초 : 818회 x 40주 x 44,315원 = 1,449,986,800원
- ※ 2023년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 1회 수업료 : 45,950원

## 6.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한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에 따라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영어학습 관련 사업을 전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사업기간은 72%가 40주 편성을 선호하며,
  - 수업시간의 경우 57%가 20~ 25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 수업실시 회수의 경우 2세는 70%가 주 2회를, 3세 이상은 2회, 3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024년도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은 군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175개소 어린이집 2세 이상 영유아 4,290명을 대상으로 2024. 3. 18부터 12. 20까지 40주간 동안 영어 선생님이 직접 어린이집 방문하여 1회에 25분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강사의 수업 시간 준수, 강사의 적극적인 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유도하여 영유아에게 외국어와 외국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사업의 취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이번 사업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형평성이 증대되었고 적정하게 위탁 사업체가 선정되는 등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1 기본 검토사항

<b>대상사무</b>	2024년도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																		
<b>위탁목적</b>	○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b>위탁근거</b>	<p>○ 법적 근거</p> <p style="padding-left: 20px;">-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p>																		
<b>위탁내용</b>	<p>○ 사업명 : 2024년도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p> <p>○ 사업대상 : 사업을 신청한 175개소 어린이집</p> <p>○ 사업기간 : 2024. 3. 18. ~ 12. 20. / 40주간 실시</p> <p>○ 참여인원 : 4,290명(만2세 이상 영유아 대상)</p> <p>○ 사업비 : 1,450백만원(전액 준비)</p> <p>○ 사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중 영어선생님이 직접 어린이집 방문 수업 진행</li> <li>- 1회 수업시간은 25분 내외로 실시</li> <li>- 어린이집 일정 등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보강 진행</li> <li>-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준비 및 지원</li> </ul> <p>○ 2023년도 대비 사업변경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업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업횟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th> <th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집</th> <th style="text-align: center;">참여영유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32주 진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2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백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1개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4,819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주 진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2회 ~ 3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0백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개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4,290명</td> </tr> </tbody> </table>	연도	수업기간	수업횟수	사업비	어린이집	참여영유아	2023년	32주 진행	주2회	1,200백만원	181개소	4,819명	2024년	40주 진행	주2회 ~ 3회	1,450백만원	175개소	4,290명
연도	수업기간	수업횟수	사업비	어린이집	참여영유아														
2023년	32주 진행	주2회	1,200백만원	181개소	4,819명														
2024년	40주 진행	주2회 ~ 3회	1,450백만원	175개소	4,290명														

<b>적 정 성 점 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운영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개편을 통해 영어강사를 직접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li> <li>· 환경변화(어린이집 신규인가, 폐원 등)에 능동적 대처 한계</li> </ul> </li> </ul> </li> <l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업체의 원인으로 사업진행 불가시 불이익 적용</li> <li>- 사업추진 완료를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월별 예산 집행</li> </ul> </li> <li>○ 경제적 효율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의 경제효과로 많은 어린이집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일괄 위탁운영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도모와 함께 별도의 프로그램 추가 진행 가능(예시 : 영어 씬머페스티벌 행사)</li> <li>- 그 외 소규모 어린이집은 수요가 적어 사업체에서 사업진행을 희망하지 않아 소외되어 왔으나, 지자체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과업범위로 지정함에 따라 소외되는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행정의 형평성 확보도 가능</li> </ul> </li> <li>○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던 영어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모집을 통하여 심의 후 선정하였기에 해당 사업체의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li> </ul> </li> <li>○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사업을 진행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완료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화된 평가점수 산출가능</li> </ul> </li>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장 및 보강,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건의 등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사업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원장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게끔 협약을 하였기에 문제없음</li> </ul> </li> </ul>
----------------------	--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 수탁기관 현황			
	구분	1 권역	2 권역	3 권역
	읍·면	화원, 옥포, 가창	다사, 하빈	논공, 유가, 현풍, 구지
	어린이집	40개소	68개소	67개소
	위탁기관	대구동심	에듀플러스	웅진에듀
	○ 수탁기간 : 2024. 3. 18. ~ 12. 20. / 40주간			
	○ 위 탁 금			
	구분	위탁금	산출기초	
	1권역	382,881,600원	216회(1주당 방문수업 횟수) x 40주 x 44,315원	
	2권역	531,780,000원	300회(1주당 방문수업 횟수) x 40주 x 44,315원	
	3권역	535,325,200원	302회(1주당 방문수업 횟수) x 40주 x 44,315원	
	합계	1,449,986,800원	818회 x 40주 x 44,315원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 위탁금 예상액과 산출내역을 아래표에 기재, 전년도대비 금년 위탁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내역 및 사유 기재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3년	1,196,905천원	814회(1주당 방문수업 횟수) x 32주 x 45,950원	
	2024년	1,449,986천원	818회(1주당 방문수업 횟수) x 40주 x 44,315원	
	- 증가사유 : 2023년 대비 사업기간 증가(32주 → 40주)			

<p>기대효과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에게 외국어와 외국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제공</li> <li>-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사업진행함에 따라 형평성 증대</li> <li>-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영어특별활동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연간 7억원 정도)</li> </ul> </li> <li>○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1.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li> <li>- 2024. 2. :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li> <li>- 2024. 3. : 사업진행</li> </ul> </li> </ul>
----------------------------	--

